

#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

제정	2010년	3월	19일
개정	2012년	3월	16일
개정	2014년	1월	27일
개정	2019년	3월	15일

주식회사 엘지화학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인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, 나머지 2인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를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 다만,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

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8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# 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, 외부인사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# 제12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회가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 사무국이 간사를 겸임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## 제4장 보칙

제13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